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5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최형두·김태호·서천호

송석준・조정훈・박성민

윤한홍 · 김민전 · 이종욱

김예지 • 박대출 • 최수진

유상범 • 박형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 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현행법 제3조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현행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 도권·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창원·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도권 외의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 에 필요한 시설
- 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민 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에 필요한 행위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취락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3조의2(수도권 외의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 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 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마. (생 략) <u><신 설></u>

<신 설>

1의2. ~ 9. (생 략) <u><신 설></u>

<u>.</u>
1
 가. ~ 마.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u>
, , , , – , , – , ,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시설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시설 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에 필요한 시설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시설 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시설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시설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시설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시설

자원의 육성에 필요한 행위

 ② ~ ① (생 략)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조

 ~ ③ (생 략)

 <신 설>

-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 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신 설>

<u>다.</u> (생 략) 2. (생 략) ② ~ ④ (생 략)

세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취락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서는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편
<u>익과 복지의 증진을 우선적으</u>
로 고려해야 한다.
세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1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
는 시설개선사업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① (현행과 같음)